



##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12.23.(금) 11:00	배포 일시	2022. 12. 23.(금)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	책임자	팀 장	김현주	044-202-1731
		담당자	사무관	김정열	044-202-1721

###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총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총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총족
    -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최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확보된 병상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 대응
  -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일반지정 병상으로 통합하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역량 높은 중환자 병상 확보로 일 20만 명 수준까지 대응

####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를 기존 국가시험에서 민간 시험까지 확대(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함)
-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 취득 등) 및 시험 간 형평성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12.19.) 주요 내용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의사결정 시 **주요 지표\***와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시행해줄 것을 권고
- \* ①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②안정적인 환자 발생, ③고위험군 충분한 면역획득
-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①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②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
- ▶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

## ① 상황 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참고치*	최근 현황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증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주간 치명률	전주 대비 감소 0.10% 이하	증가 0.08%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68.7%
고위험군 면역 획득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60% 이상	28.8% 48.9%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 ③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 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시길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 2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 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 병상으로 통합하고,
  -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 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3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중략...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 주요방역지표 현황

#### 【병상】

- 12월 2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 12.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증감)	가용 (증감)	
전국	1,639 (+0)	578 (+7)	1,061 (-7)	2,735 (+0)	1,158 (+30)	1,577 (-30)	1,922 (+0)	443 (-9)	1,479 (+9)	
수도권	1,145 (+0)	382 (+16)	763 (-16)	1,944 (+0)	807 (+14)	1,137 (-14)	1,025 (+0)	188 (-4)	837 (+4)	
	서울	215	117	98	426	251	175	253	55	198
	경기	582	178	404	945	379	566	421	73	348
	인천	348	87	261	573	177	396	351	60	291
비수도권	494 (+0)	196 (-9)	298 (+9)	791 (+0)	351 (+16)	440 (-16)	897 (+0)	255 (-5)	642 (+5)	
	강원	44	19	25	33	16	17	37	17	20
	충청권	102	49	53	154	77	77	411	76	335
	호남권	138	39	99	191	98	93	203	110	93
	경북권	89	31	58	161	69	92	93	20	73
	경남권	104	54	50	235	87	148	132	28	104
	제주	17	4	13	17	4	13	21	4	17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위중증·사망자】

- 12월 23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0명(전일 대비 17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63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92.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929명이고, 확진자(68,1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9,604명으로, 수도권 37,365명, 비수도권 32,239명이다. 현재 394,0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23.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0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36개소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39개소)가 있다. (12.22.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12.23. 0시 기준)

- < 붙임 > 1.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  
2.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담당 부서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	책임자	팀 장	김현주	044-202-1731
		담당자	사무관	김정열	044-202-1721
담당 부서 <마스크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	책임자	팀 장	곽 진	043-719-7140
		담당자	사무관	김진명	043-719-9064
담당 부서 <병상>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책임자	팀 장	설예승	044-202-1790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2-1788
담당 부서 <이출 허용 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책임자	팀 장	정통령	043-719-9370
		담당자	역학조사관	안영서	043-719-9330

**붙임1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안)**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3종)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폐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의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